

[사 건 명] 행심 2016-29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반려에 따른 취소 청구[무도학원]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 개요

- 가. 청구인은 2016. 7. 28 인천광역시 ○○구 ○○로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의 댄스 스포츠학원을 설립하고자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8. 4. 청구인에게 신청 수리 거부를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 8. 11.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 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 요건을 구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4706)

- 나. 이 건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어 법의 적용에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무도학원, 무도장은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제6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범위에서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불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이라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나. “대한 댄스스포츠 경기연맹(KFD)” 은 2007. 2. 2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설립된 경기단체 이므로 “체육종목” 의 하나로 분류 되는 것이고,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체육종목 성향이 우세하여 「체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보건법」 상이나 개별 법률에서도 무도학원업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예능을 교습하는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질의 회신한 바 있으며, 2010 법제처에서 ‘체육계열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법령해석을 한 것은 체육관

련 시설은 「체육시설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의 국제표준무도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설립 등록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리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11.10.25. 자로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한다)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에 ‘댄스’ 항목이 추가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6에서 건축물용도를 체육시설법의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학원법의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한정하고 있으며, 무도학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른 풍속영업 대상이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3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바. 「학교보건법」 제6조

사.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6조

2. 판단

청구인의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관계법령 및 판례,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22840호, 2011. 4. 5. 일부개정) 제3조의 2,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종류 중 기예 계열에 ‘댄스’, ‘무도학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23250호, 2011. 10. 25. 일부개정) 제3조의 3, 제1항 별표 2를 개정하여 평생직업 교육학원의 종류 중 기예 계열에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를 추가하였다.

나. 체육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16701호, 2000. 1. 28)에서 처음으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중에 무도학원업을 신설하였고,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이라 규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 규정은 현행법령에서도 같다.

다. 2014년, 201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제표준무도과정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은 체육시설법에 의거 운용해야하는 체육시설이므로, 행정청의 학원법에 의한 학원설립 등록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는 재결이 있었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라. 대법원 판결(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은 이용목적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의 경우에는 학원으로 설립·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2011. 10. 25. 대통령령 23250호로 학원법시행령이 개

정되기 전의 판결로써 반드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만약 무도학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을 가지고 체육시설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학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면, 무도학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이용목적이 체육시설 이면서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설립·운영할 수도 있는 탈법적인 위험성이 있는 만큼, 다른 법들의 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국제표준무도과정(볼룸댄스)의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 인 만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